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 상향 〉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58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 상향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5. 2. 27.
3. 회부연월일: 2025. 2. 2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직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대상인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는바,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재해유족급여 수급연령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 Ⅲ. 검토의견

#### □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 상향

개정안은 ‘재해유족급여’의 수급대상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① ~ ③ (생략) |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관하여는 제2항 자녀와 제3항 손자녀를 25세 미만인 사람 또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 ④ (생략)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뿐만 아니라 그 유족에 대해서도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sup>1)</sup>

이를 위해 같은 법은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에 대해 「공무원 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유족에게는 ‘퇴직유족급여’ 또는 ‘재해유족급여’가 지급됨.<sup>2)</sup>

---

1) 「사학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학연금법」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1.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3.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유족에는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해당되며, 이 중에서 자녀와 손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태인 사람으로 한정되고, 손자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됨.

[표 1] 현행법상 유족의 범위

| 구분  | 내용                                                                                                                                                                                                   |
|-----|------------------------------------------------------------------------------------------------------------------------------------------------------------------------------------------------------|
| 배우자 | ·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 자녀  | · 퇴직일 이후 출생·입양 자녀 제외, 퇴직 당시 태아는 재직 중 출생 자녀로 봄<br>· 19세 미만이거나,<br>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태에 있는 사람                                                                           |
| 부모  | ·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부모 제외                                                                                                                                                                              |
| 손자녀 | · 퇴직일 이후 출생·입양 손자녀 제외, 퇴직 당시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봄<br>·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태에 있는 경우로,<br>- 19세 미만이거나,<br>-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태에 있는 사람 |
| 조부모 | ·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조부모 제외                                                                                                                                                                             |

자료: 「사학연금법」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내용 정리

개정안은 ‘재해유족급여’의 수급대상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연혁과 유사 제도의 연령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금 수급 연령 기준 비교

| 구분     |      | 사학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국민연금법                                                                                                                                                                                                                                                                                                                                                                 |
|--------|------|------------------------------------------------------------------------------------------------------------------|------------------------------------------------------------------------------------------------------------------------------------------------------------|----------------------------------------------------------------------------------------------------------------------------------------------------|-----------------------------------------------------------------------------------------------------------------------------------------------------------------------------------------------------------------------------------------------------------------------------------------------------------------------------------------------------------------------|
| 퇴직유족급여 | 자녀   | (§2②) 19세 미만                                                                                                     | (§3②) 19세 미만                                                                                                                                               | (§3②) 25세 미만                                                                                                                                       | (§73①2) 25세 미만                                                                                                                                                                                                                                                                                                                                                        |
|        | 손자녀  | (§2③) 19세 미만                                                                                                     | (§3②) 19세 미만                                                                                                                                               | (§3③) 25세 미만                                                                                                                                       | (§73①4) 19세 미만                                                                                                                                                                                                                                                                                                                                                        |
|        | 개정연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 → 19세 미만</li> <li>법률 제11721호 (2013. 4.5. 개정, 2013.10.6. 시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 → 19세 미만</li> <li>법률 제11488호 (2012.10.22. 개정, 2013. 4.23. 시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 → 25세 미만</li> <li>법률 제18803호 (2022.2.3. 개정, 공포일 시행)</li> <li>*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연금 수급 자에게도 적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 → 19세 미만</li> <li>법률 제11143호 (2011.12.31. 개정, 2012. 4. 1. 시행)</li> </ul> <p>[자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 → 25세 미만</li> <li>법률 제14214호 (2016. 5.29. 개정, 2016.11.30. 시행)</li> <li>*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연금 수급 자에게도 적용</li> </ul>                                                                           |
| 구분     |      | 사학연금법                                                                                                            | 공무원 재해보상법                                                                                                                                                  | 군인 재해보상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재해유족급여 | 자녀   | (§2②) 19세 미만                                                                                                     | (§3②) 25세 미만                                                                                                                                               | (§3. 2) 25세 미만                                                                                                                                     | (§63①2) 25세 미만                                                                                                                                                                                                                                                                                                                                                        |
|        | 손자녀  | (§2③) 19세 미만                                                                                                     | (§3②) 25세 미만                                                                                                                                               | (§3. 2) 25세 미만                                                                                                                                     | (§63①2의2) 25세 미만                                                                                                                                                                                                                                                                                                                                                      |
|        | 개정연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 → 19세 미만</li> <li>* 퇴직유족급여와 동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 → 25세 미만</li> <li>법률 제20399호 (2024.3.19. 개정, 2024.6.20. 시행)</li> <li>* 적용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유족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 → 25세 미만</li> <li>* 군인연금법 조항 적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 → 25세 미만</li> </ul> <p>[자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 제15665호 (2018. 6.12. 개정, 2018.12.13. 시행)</li> <li>*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연금 수급 자녀에게도 적용</li> </ul> <p>[손자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 제19612호 (2023.8.8. 개정, 2024.2.9. 시행)</li> <li>*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연금 수급 손자녀에게도 적용</li> </ul> |

주: 1. 개정연혁은 현행 수급 연령 기준으로 개정된 시점의 내용을 기재함  
 2. 개정안은 ‘재해유족급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사학연금법」은 유족의 정의에서 퇴직유족급여와 재해유족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두 급여 관련 급여를 모두 정리함  
 자료: 「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해당 조항 정리

먼저, 「사학연금법」은 자녀 및 손자녀의 수급 연령 기준을 퇴직유족급여와 재해유족급여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연령 기준은 2013년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한편, ‘퇴직유족급여’<sup>3)</sup>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은 2012년 취업 현실 등을 고려하여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는 반면, 「군인연금법」은 2022년 자녀 및 손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음. 또한 「국민연금법」은 2011년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한 후 2016년 청년의 현실적인 경제활동 시작 시점을 고려하여 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으나, 손자녀의 연령 기준은 19세 미만을 유지하고 있음.

‘재해유족급여’<sup>4)</sup>를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2024년에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였고,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연금법」의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2022년에 개정된 「군인연금법」의 내용(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이 적용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2018년과 2023년에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 연령 기준을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음.

이와 같이 「사학연금법」은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수급 연령 기준을 모두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유족급여의 경우 「군인연금법」과 「국민연금법」(자녀만 해당)은 연령 기준을 25세

---

3) 「국민연금법」의 경우 유족연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유족보상연금

미만으로 규정하고, 재해유족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모두 2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직원으로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재해 유족급여 수급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으로,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규정된 25세 미만을 적용받는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에 규정된 19세 미만을 적용받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 「사학연금법」은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수급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직접 규정하고, 재해유족급여의 수급 요건 상실 사유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0조의 ‘25세가 되었을 때’를 준용하고 있어,<sup>5)</sup> 「사학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의 수급 연령 기준(19세 미만)과 이를 상실하는 연령 기준(25세가 되었을 때)이 맞지 않는 상황임.

---

5) · 「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20399호, 2024.3.19. 개정, 2024.6.20. 시행)

– (제3조제2항) 수급 연령 기준: 19세 미만 → 25세 미만

– (제40조제1항) 상실 연령 기준: 19세가 되었을 때 → 25세가 되었을 때

· 「사학연금법」은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을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0조를 준용함  
\* 「사학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이하 생략)

[표 3] 자녀 및 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 수급 및 상실 연령 기준

| 구분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수급 연령 기준 | (§2②,③) 19세 미만    | (§2④) 25세 미만 | 직접 규정                |
| 상실 연령 기준 | (§42①) 25세가 되었을 때 |              | 「공무원 재해보상법」 §40①4 준용 |

자료: 「사학연금법」 현행 해당 조항 및 개정안 정리

아울러, 2024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15~1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1%, 고용률은 7.4% 수준이고, 25~29세에 이르러 경제활동참가율 77.9%, 고용률 72.7%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자녀 또는 손자녀가 학업,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25세 이전까지 유족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상태

(단위: 천명, %)

| 구분           | 15~19세 | 20~24세 | 25~29세 | 전체    |
|--------------|--------|--------|--------|-------|
| 전 체(A)       | 2,230  | 2,498  | 3,445  | 8,173 |
| 경제활동인구(B)    | 180    | 1,245  | 2,682  | 4,107 |
| 경제활동참가율(B/A) | 8.1    | 49.9   | 77.9   | 50.3  |
| 취업자(C)       | 166    | 1,161  | 2,504  | 3,832 |
| 고용률(C/A)     | 7.4    | 46.5   | 72.7   | 46.9  |

자료: 통계청,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024.7.

따라서, 재해유족급여의 수급대상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은,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간의 형평성 확보, 현행법에서의 급여 수급과 상실 연령 기준 불일치 문제 해소, 청년층의 자립적 경제활동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현행 「사학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적용대상과 달리, 손자녀의 기준에서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적용대상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해당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사학연금법                                                                                                                                                                                                                                                                                                                                                                                                        |                                                                                                                                                                                        | 공무원 재해보상법                                                                                                                                                                                                                                                                           |
|--------------------------------------------------------------------------------------------------------------------------------------------------------------------------------------------------------------------------------------------------------------------------------------------------------------------------------------------------------------------------------------------------------------|----------------------------------------------------------------------------------------------------------------------------------------------------------------------------------------|-------------------------------------------------------------------------------------------------------------------------------------------------------------------------------------------------------------------------------------------------------------------------------------|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정의)</p> <p>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u>자녀</u>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p> <p>③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u>손자녀</u>는 <u>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9세 미만인 사람</li> <li>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li> </ol> | <p>제2조(정의)</p> <p>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관하여는 제2항 <u>자녀</u>와 제3항 <u>손자녀</u>를 25세 미만인 사람 또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p> | <p>제3조(정의)</p> <p>② 제1항제5호에 따른 <u>자녀와 손자녀</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u>손자녀</u>는 그의 <u>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u>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5세 미만인 사람</li> <li>2.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li> </ol> |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sup>6)</sup>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 칙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먼저, 수급 연령 기준 사항은 이와 관련한 하위 법령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과 같이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 부칙의 적용례는 현행법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수급 중인 자녀 및 손자녀인 유족에 대해 개정안을 적용하는 한편, 교직원의 퇴직·사망 등이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상 수급 연령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이 없는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녀인 유족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연금 수급 연령 기준을 상향하였던 입법례에서도 추가적인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법 시행 당시 수급자에 대해 개정내용을 적용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부칙의 적용례는 적합한 것으로 보임.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은 「사학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유족연금'으로 적용됨

\* 「사학연금법」 제42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순직'은 '직무상으로 봄

[표 5] 연금 수급 연령 기준 상향 관련 적용례

|                                                                                                                     |
|---------------------------------------------------------------------------------------------------------------------|
| <b>「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20399호, 2024.3.19. 개정) 부칙</b>                                                                    |
| 제2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 <b>「군인연금법」(법률 제18803호, 2022.2.3. 개정) 부칙</b>                                                                         |
| 제2조(퇴역유족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 <b>「국민연금법」(법률 제14214호, 2016.5.29. 개정) 부칙</b>                                                                        |
| 제5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③ 제73조제1항제2호,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 <b>「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5665호, 2018.6.12. 개정) 부칙</b>                                                                    |
|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b>「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9612호, 2023.8.8. 개정) 부칙</b>                                                                     |
|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인 손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과거와 달리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유족연령을 25세로 확대하여 유족연금 수급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 대학진학, 병역의무 수행, 취업난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층 고용률은 40%대에 불과하며, 청년층의 실질적 경제 자립이 가능한 시기는 25세 이후가 높은 비중 차지
- 아울러,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24.3.)으로 공무원 유족은 25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또한 재해유족급여 유족연령을 연장하여 양 가입자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다만, 손자녀의 경우 현행법령에 따라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일부수정 의견을 제시함.

| 개정안                                                                                                                                                        | 수정안                                                                                                   |
|------------------------------------------------------------------------------------------------------------------------------------------------------------|-------------------------------------------------------------------------------------------------------|
| 제2조(정의)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관하여는 제2항 자녀와 제3항 손자녀를 25세 미만인 사람 또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제2조(정의) ④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일부수정

- 공무원, 군인, 국민 등 각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해보상 제도 유족연령이 25세인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및 제도 간 통일성 측면에서 개정안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다만, 손자녀의 경우 현행법령에 따라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일부수정이 필요함(교육부 수정안과 동일).

문 의 처

02)6788-5189